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684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981	강원특별자치도	4,698
부산광역시	10,431	충청북도	4,750
대구광역시	7,443	충청남도	6,431
인천광역시	4,231	전북특별자치도	5,234
광주광역시	4,627	전라남도	5,228
대전광역시	4,741	경상북도	7,801
울산광역시	3,616	경상남도	10,172
세종특별자치시	1,146	제주특별자치도	2,919
경기도	20,235		